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1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시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3.

다. 회 부 일 : 2025.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 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시

개정안은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17조(개설 등) ① ----- ----- -----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신 설>	2.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신 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 설>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 ⑤ (생략) 제39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u> <u>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수의사가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워 동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은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가축의 진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 「의료법」 과 개정안 비교 】

개 정 안	「의 료 법」
제17조(개설 등)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⑤ (생략)	② ~ ⑩ (생략)

개 정 안	「의 료 법」
제39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 내 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 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 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 항까지·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 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 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 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 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에서의 동물진료업 원칙’ 위반에 대한 처
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벌의 균형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원칙’ 위반에 대하여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동일한 처
분 수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의료법」은 「수의사법」에 비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

둘째, 「수의사법」 제41조는 동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내의 다른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³⁾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위반 시 처분 수위는 같은 법 내의 다른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나,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의 예외 사유 중 ‘동물

-
- 1) 예컨대 정해진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해진 자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수의사법」은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 3) 「의료법」에서도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자, ②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안 제17조제1항제2호)’는 중
한 질병이나 호스피스 치료 등 극히 제한적인 요청에만 허용하도록 수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